

#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진수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78
----------	------

발의연월일 : 2007. 6. 18.

발 의 자 : 진수희 · 김애실 · 이방호  
전여옥 · 송영선 · 이윤성  
이군현 · 임태희 · 김춘진  
윤건영 · 차명진 · 정화원  
엄호성 · 이재웅 의원  
(14인)

## 제안이유

최근 정보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환경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

인터넷망 보급사업의 성과로 기업 인터넷활용 세계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2위 및 전체인구의 73.5%가 인터넷을 이용할 만큼 보편화되어 인터넷 환경 구축 및 이용현황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반면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연계시키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제도와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여 콘텐츠 공급 부문에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행위, 인터넷 이용자

부문에서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동영상의 유포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급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색서비스사업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색서비스 및 그 사업에 관해 정의하고 체계적 관리 및 규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 이를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인터넷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나.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안 제4조)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의 의무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던 것을 고려

하여 그 의무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과 자율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 **라.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안 제7조)**

검색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상호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당사자간 불만사항과 피해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일방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호간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을 두고자 함.

#### **마.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안 제8조)**

검색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가 외국의 검색서비스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편집검색에 의해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검색서비스사업자간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 **바. 즉시신고버튼 설치 규정(안 제9조)**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설치된 신고를 위한 바로가기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

#### **사. 광고 등의 제한(안 제17조)**

검색결과와 광고가 혼동을 야기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혼동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는 광고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입력창 등에 광고를 삽입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중 인터넷망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적 설비를 갖추어 제1호의 검색서비스 및 기타 부가적인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

는 웹사이트(이하 “검색서비스 웹사이트”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콘텐츠제공자”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콘텐츠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색서비스이용자”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매개하여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체물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7. “자동검색서비스”란 기계적인 검색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검색 결과의 배치, 순위 등에 관하여 인위적인 조작 등의 방법으로 가공되지 않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말한다.
8. “즉시신고버튼”이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 웹사이트에 설치된 신고를 위한 것으로서 한 번의 클릭으로 즉시 신고, 접수, 보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뉴스서비스”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검색서비스와 연계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신문, 인터넷신문과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뉴스 등의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10. “인기검색순위”란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검색서비스이용자의 검색횟수, 방문횟수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검색순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검색서비스사업자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 ① 본 법에 따라 검색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검색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등록된 검색서비스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의 검색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의 의무 등

제5조(검색서비스사업자의 의무)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관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검색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며 이용자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포되지 않게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1.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나 표현이 담긴 콘텐츠 또는 서비스
2.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포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
3.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나 서비스
4. 불공정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표현이 담긴 콘텐츠 또는 서비스
5.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나 표현이 담긴 콘텐츠 또는 서비스
7. 그 밖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또는 서비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 웹사이트 상의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가 게시물, 댓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작성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진다.

제6조(콘텐츠 제공자의 의무) 콘텐츠 제공자는 제5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 및 유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7조(부당요구금지 의무)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 무상으로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
2. 부당하게 콘텐츠 및 검색서비스의 제공 조건이나 대가의 지급조건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
3. 부당하게 콘텐츠 및 검색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할 것을 요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 제3장 자동검색서비스 제공 및 즉시신고버튼 설치 등

제8조(자동검색서비스 제공) ① 검색서비스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검색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동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자동검색서비스 이외에 검색서비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된 형태의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검색서비스는 제2항의 검색서비스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자동검색서비스에 의하여 검색된 결과에 대하여 검색수수료 등 기타 이득의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검색 결과 또

는 순위 등을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자동검색서비스의 기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즉시신고버튼 설치 등)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즉시신고버튼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
2.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음악, 화상(畫像), 동영상 등의 게시물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신고

② 즉시신고버튼은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웹사이트 초기화면 및 각 게시물별로 1개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즉시신고버튼에 의해 신고된 사항을 당해 콘텐츠 제공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를 통하여 검색접근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즉시신고버튼의 설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내용의 보관의무)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즉시신고버튼으로 신고된 내용의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제목, 신고인 아이디, 신고인 수, 신고 시간, 검색화면, 문자, 사진, 이미지, 음향, 동영상 등의 자료와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결과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고버튼을 통하여 신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관은 신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검색접근금지조치 및 자료보관의무 등)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검색접근금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콘텐츠 제공자에게 즉시 고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72시간 이내에 심의 또는 검토하여 검색접근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콘텐츠 제공자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가 검색접근금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검색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검색접근금지 요청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자료는 처리완료일부

터 1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행관계인, 당해 콘텐츠 제공자,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의 검색접근금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색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유지 및 해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한 시기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르며 요청이 없거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최대 90일 이내로 한다.

⑥ 검색접근금지조치에 관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정보누설 행위 금지 등

제12조(이용자정보공개금지)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검색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자된 자 및 검색서비스이용자 등의 개인정보 또는 검색이용정보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정당한 범위 내에서 회원 또는 이용자가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 웹사이트 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포방지)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의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표시된 매체물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고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고 접근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포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색의 제한 및 삭제)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해당 매체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전항의 제한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경우 당해 자료를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경우 당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색의 제한 및 삭제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악성 프로그램 유포방지)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자동 설치되는 유상의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악성프로그램 유포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뉴스 및 인기검색서비스 등)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 제공자의 허락 없이 당해 뉴스콘텐츠의 제목 및 내용을 임의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기사에 대하여 오보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을 요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인기검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 및 명예·신용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서비스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서비스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뉴스 및 인기검색서비스 등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광고 등의 제한)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광고를 제공하거나 검색서비스를 통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때에는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이용자의 검색서비스의 이용에

저해 되지 않도록 검색입력창에는 광고를 삽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광고 등의 제한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18조(심의 및 처리 책임자의 지정 등) ① 검색서비스사업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및 처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심의 및 처리
2. 즉시신고버튼에 의해 신고 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처리
3. 검색접근금지요청에 관한 심의 및 처리

②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심의 및 처리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정보통신부장관은 검색서비스사업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검색서비스사업자의 감독권
2.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심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청권
3. 심의 및 처리 책임자의 출석 요청권
4. 시정명령권
5. 검색금지요청권

## 6. 기타 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요청

### 제6장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

제20조(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20조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콘텐츠제공자는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콘텐츠제공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장 벌칙

제23조(벌칙)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영리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검색서비스 형태로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매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서비스 형태로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23조 및 제24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에 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